

海岸保全地區의 維持管理

해안보전사업등에 의해 조성된 시설을 처분하는 경우

적정화법의 적용

해안관리자가 해안보전시설의 신설 또는 개량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국가는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적정화법의 보조사업 등에 해당하므로 당해 시설에 대해서는 동법의 적용을 받는다.

승인을 요하는 처분

적정화법 제22조에는 보조사업등의 수행상 취득 또는 효용이 증가(보조금등에 의한 증 개축, 수선, 개량 등을 행한 것)한 재산에 대하여는 농

림수산대신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조금 등의 교부목적에 반하여 사용, 양도, 교환, 대부한 담보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보조사업 등에 의해서 취득한 재산의 처분을 제한함으로써 보조사업 등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승인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경우는 처분이 가능하다.

- ① 농림수산대신의 승인을 받았을 때
- ② 보조금 등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였을 때
- ③ 농림수산대신이 보조금

등의 교부목적과 당해 재산의 적용연수를 감안하여 정한 처분제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 (해안보전 시설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지 않음)

사전협의

이상과 같이 적정화법 제2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처분에 있어서는 모두 농림수산대신의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사전에 수산청과 협의하는 것이 좋다.

해안보전시설의 처분에 있어서는 그 승인에 있어서 해당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 지형, 기상, 해상 등 해안보전상의 문제점을 비롯하여 어항의 이용, 어항관계 사업의 관련 등 여러가지 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행해진다.

해안보전시설의 처분에 있어서는 그 승인에 있어서 해당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 지형, 기상, 해상 등 해안 보전상의 문제점을 비롯하여 어항의 이용, 어항관계 사업의 관련 등 여러가지 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행해진다.

처분 등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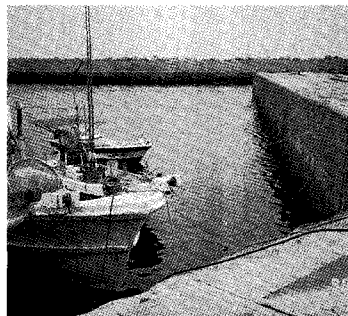
해안보전시설처분 등의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시설의 목적의 사용

㉞ 해안 보전시설의 일부를 이설하는 경우(설치장소의 변경)

어항정비장기계획에 따라 어항의 정비가 진행되는 가운데 해안 호안의 전면(前面)을 매립하여 어항시설 용지 등의 어항시설이 조성되는 사례가 매우 많아지고 있다.

이 경우 해안 호안의 전면에 있는 호안의 소파공, 근고공 등의 형태가 다른 블록은 매몰되어 그 효용을 잃게 되므로, 이러한 블록은 소파를 필요로 하는 다른 장소로 이설하여(일부 들어내지 못하는



것은 매몰시키는 경우도 있음) 소파공, 근고공, 이안제 또는 돌제 등의 해안보전시설로서 사용하여 시설의 효과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것임.

㉞ 해안 호안의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해안 호안의 일부를 도로법의 도로(어항관련도를 포함) 또는 어항시설인 임항도로의 일부로 겸용하여 사용하는 일이 근년에 많아지고 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도로와 해안 보전시설은 법률상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므로 각각 별도로 정비해야 하나 입지조건 등 사정에 따라 겸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도 당연히 목적외의 사용에 해당하는 것임.

해안호안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는 해안 보전시설 관리상의 지장 유무, 시설의 안전도등 이외에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그 결과, 겸용하도록 하였을 경우는 반드시 해안관리자는 도로관리자와 겸용 공작물관리 협정서(주①,②)를 체결, 필요에 따라 동 협정의 실시에 관한 취급각서(주③)를 교환하여 겸용부분의 시설 관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㉞